

2024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검단신도시 AA32블록 공동주택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3. 3. 12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신동아건설(주)외 4인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		
	검단신도시 AA32블록	관련지번	
	대지면적 38,846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9,134.2748㎡	건폐율 23.51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15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1동
	최고높이 43.9m	용적률 196.15%	연면적 합계 120,174.2482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계획분야)관련	○ 단위세대 평면 발코니확장 전 유효폭 2,100mm 이상 확보할 것 ○ PM 보관소는 방화구획하고 화재 감시 및 진화를 위해 개방시킬 것	
	(소방분야)관련	○ 지하2층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하는 3면 방화벽은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3대 이내마다 3면 방화구획 할 것	
(행정)사항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
심의결과	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2024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주안동 미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3. 3. 12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안미도아파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
	18-2	관련지번	
	대지면적 7,716.3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277.22㎡	건폐율 16.55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27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3동
	최고높이 76.95m	용적률 249.83%	연면적 합계 28,317.91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계획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폭을 확보하고, 회전 등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할 것○ 주출입구 위치를 주변 교통 흐름과 현황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○ 부지 남측 4m도로를 6m 이상으로 확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(기존 도록폭의 연속성 유지 검토)○ 운동시설 앞 방풍실은 홀과 함께 재계획하기 바람○ 주변 저층주거지와 도시경관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바람○ 지상층 외부공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○ 지하층, 지상1층 평면도 및 배치도가 일치하도록 도면을 정리할 것○ 지하층의 헴룸의 지상 처리 방안을 도면으로 작성할 것	
	(구조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1층 피로티 부분 통로를 고려하여 기준층 벽체와 간섭여부를 검토할 것	
(소방분야)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상층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바,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은 너비8m×길이15m 이상 확보할 것○ 단위세대 실외기실은 방화 구획할 것○ 지하주차장 연기배출 관련 도서를 작성할 것		

	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--	--------	---

심의결과	<p>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	--

2024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3호 안건: 가정2지구 B-1블록 공동주택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3. 3. 12.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정우필, 조종수		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		
	가정2지구 B-1블록	관련지번	
	대지면적 25,013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,777.43㎡	건폐율 19.0997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22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6동
	최고높이 69.45m	용적률 188.64%	연면적 합계 70,730.04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행정)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
심의결과	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